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51

발의연월일: 2020. 7. 14.

발 의 자:한정애·윤미향·김영주

양이원영 · 강선우 · 장철민

김상희 · 윤관석 · 전혜숙

허종식 · 황운하 · 고영인

박성준 · 김승남 · 강병원

박홍근 • 진선미 • 이용우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8월 27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8월 28일 시행될 예정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서는 학습기업 사업주가 학습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학습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문

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 조의2 및 제15조제4항). 법률 제 호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제2조의2(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1
법」, 「근로기준법」, 「근로	
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	「기간제 및 단시간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u>관한 법률」에</u> 따른 판정·결	법률」 및 「산업현장 일학습
정・의결・승인・인정 또는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 ③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생 략)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시	4
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 공익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 명으로 구성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⑤ ~ ⑨ (생 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현
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
률」에
⑤ ~ ⑨ (현행과 같음)